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ba



서울특별시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업무 협약서

사업명 : 2017년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

협약기간 : 2017년 11월 28일 ~ 2018년 4월 30일

특화사업명 : 도시형소공인 업체정보 DB구축
 도시형소공인 세미나 개최
 공동브랜드 및 유통 플랫폼 기반조성
 위클리 지식세미나
 전시회 참가 지원
 소공인 판로 지원
 도시제조업 진흥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협약금액 : 900,000,000원

(단위 : 원)

정부지원금	자율출자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400,000,000	500,000,000	-	500,000,000	900,000,000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 단, 본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관련 서울특별시에서 소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 기관(예 : 도시제조업진흥재단)을 신설할 경우, 주관기관을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신설기관으로 변경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모두 이관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사업계획에 의하여 “센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센터”사업을 통한 소공인의 성공적인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수행)

1.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동안 협약서와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일정에 의거하여 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합의하에 사업의 범위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 지원 및 관리)

1.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게 협약서에 명시된 정부지원금을 사업비로 지급하며, 사업비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과 자율출자금을 지침에 따라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이에 대한 점검·정산을 실시하여 지침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3. “주관기관”은 전체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별도로 회계처리 하고, 사업비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 서류를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4. “주관기관”은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 상에 계상된 비목별 사용내역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사용하여야만 하며, 총사업비 사용금액이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주관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5. 제2항에 의거 “주관기관”이 작성한 장부 및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의 보존기한은 본 협약서에 의한 협약 만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로 하며, 보존기한 만료 전 “전담기관” 또는 “협력기관”이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주관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전담기관”은 사업 수행 중 “주관기관”的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사업비 사용)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약 체결일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 중 지방비에 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승인(소상공인혁신과-1181, 2017.10.17.)한 사업계획에 부합되는 경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정 시기(2017.7.1.)로 소급하여 사업비 집행을 인정한다.

제5조(사업 수행보고)

1. “주관기관”은 이 지침에 의거 「중간·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중간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잔금 지급여부 및 지급된 정부지원금의 환수 여부 등을 결정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게 사업 추진 내용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추진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 대하여 상시 진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5. “주관기관”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주관기관”의 사업 추진 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상정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관련자료의 제출 등)

1.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이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요구시 가감 없이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확인시 관계서류의 열람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이유로 관련자료·내용 누락으로 본 사업 수행에 있어 부실을 초래한 경우, “전담기관”은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변경)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상황변경이 있는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전담기관”에 협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 기한은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로 한다.

제8조(협약의 해약)

1.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가.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이 지침 및 협약내용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 나. “주관기관”이 “전담기관”的승인 없이 사업기간 및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 다. “주관기관”的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제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마.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바.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본 협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

2. 본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게 지급한 사업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즉시 사업비를 정산하고 “전담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담기관”에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정산)

1. “주관기관”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사업비 사용내역 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내역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정부지원금 잔액을 산정한다.

제10조(사업비 환수)

1.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 집행 잔액 및 이자를 “전담기관”이 요청한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사업 중단 등에 의해 사업비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이 통보하는 기일까지 “전담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사업비 환수 등에 대해 계속 불응할 경우 사업비 환수를 위해 채권 추심 등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1.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전담기관”的 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기간 중 관련법령과 “전담기관”的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변경된 법령과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협약 기간 및 지원 금액)

1. 본 협약서에 의한 협약기간은 서약한 날로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2. 본 협약은 매년 운영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연장여부를 결정하며, “전담기관”的 협약연장에 관한 서면통보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자동 연장한 것으로 한다.

제13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전담기관”, “주관기관”, “협력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4조(기 타) “주관기관”은 본 사업수행 관련하여 발표, 홍보 등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허락 하에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15조(결과물의 소유) 소공인이 본 사업의 결과로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상표권,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은 소공인의 소유로 한다(단, 2명 이상의 소공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지적재산권 또한 공동으로 소유한다. 또한 주관기관은 본 사업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을 소공인 지원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제 16조(해 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017년 11월
대표회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시 장



-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현금납부 확인서 1부. 끝.